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나165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나165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2가단52081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안예은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나영

변론 종결 2024. 5. 17.

판결 선고 2024. 7. 1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2가단520817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C(H생)와 피고 사이에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8,286,8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86,88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새로이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포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비면책채권 관련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연대보증채무자인 C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에도 그 면책의 효과가 미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가 파산면책 신청 당시 원고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어서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전제 사실 ① C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 2019하단738, 2019하면738 사건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21. 1. 25.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② 위 파산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위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건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는 적어도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① C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E의 대표이사였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 ②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D은 2019. 2. 1. C에게 기한이익상실예정 최고서를 송달하는 등 이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C가 직접 이를 수령하였다.
- ③ D은 2019. 3. 15. C가 대표이사로서 있는 E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 ④ C가 위와 같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E도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E의 채권자목록에는 D의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C가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알았더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춰, C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파산면책 신청 당시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C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안 이상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그 전제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타 주장 관련

피고는 항소이유에서 그 밖에도,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제척기간의 도과,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 등의 주장을 하나, 이와 관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용두

판사최성수

판사임은하